

(붙임)

## 주권비상장법인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유의사항 안내

-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감사前 재무제표'를 정기총회 6주일 전에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제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6조)

※ 주권상장법인도 제출대상이며 제출방법은 한국거래소에 문의

### 1 제출 대상

#### ①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 (예) 12월말 결산 법인의 경우 2019년말 개별재무제표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일 경우, 2020년 사업연도(' 20.1.1 ~ 12.31.)의 감사前 재무제표를 2021년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함

#### ② 금융회사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농협은행·수협은행

\*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신탁업자/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 2

## 제출 방법

### ① (제출서류) 외감법 시행령 제8조 제5항(붙임2, 관련법규 참조)에 따라 공문\*과 함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접속 - 공문 및 첨부서류 샘플다운로드 TAB - 감사전 (연결) 재무제표 작성공문 서식 사용

- 감사전 재무제표는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포괄)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식 모두\*를 의미

\* 일부 누락 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식을 포함하여 제출 필요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별도로 감사前 연결재무제표 (공문 포함)를 추가 제출

### ② (제출방법)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에 회사가 직접 제출

※ 상장회사의 경우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http://filing.krx.co.kr>)에 접속하여 감사전 재무제표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므로, 관련 시스템 상 문의는 한국거래소로 문의바람

### ③ (제출 기한) 외감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아래의 기한 내에 모든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구 분		제출기한
개별(별도) 재무제표		정기총회 6주일 전 <sup>1)</sup>
연결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적용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sup>2)</sup>
재무제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정기총회 4주일 전 <sup>3)</sup>

1)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

3)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기한 예시 >**

주총예정일	재무제표	제출기한	
'21.3.26.(금)	개별(별도)재무제표	정기총회 6주 전	'21.2.11.(목) <sup>주</sup> 24시까지
	연결재무제표 (K-IFRS 적용기업)	정기총회 4주 전	'21.2.25.(목) 24시까지
'21.3.31.(수)	개별(별도)재무제표	정기총회 6주 전	'21.2.16.(화) 24시까지
	연결재무제표 (K-IFRS 적용기업)	정기총회 4주 전	'21.3.2.(화) 24시까지

주) '21년은 제출일이 공휴일이므로 공휴일 다음 영업일('21.2.15.)까지 제출가능

-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이 시차를 두고 감사인에게 제출되는 경우, 증선위에도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을 각각 제출할 수 있음 (단, 최종 제출은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 제출 필요)

\* 감사인의 재무제표 기말감사를 위한 현장 감사착수일이 법정 제출 기한보다 이른 경우,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출 기한 이전이라도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제출 시 증선위에도 동시에 제출

※ 제출의무 미준수시, 이사·업무집행지시자·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외감법 제42조1호)

- ▶ 증선위는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위원,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해임권고 및 회사에 대하여 감사인 지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외감법 제29조①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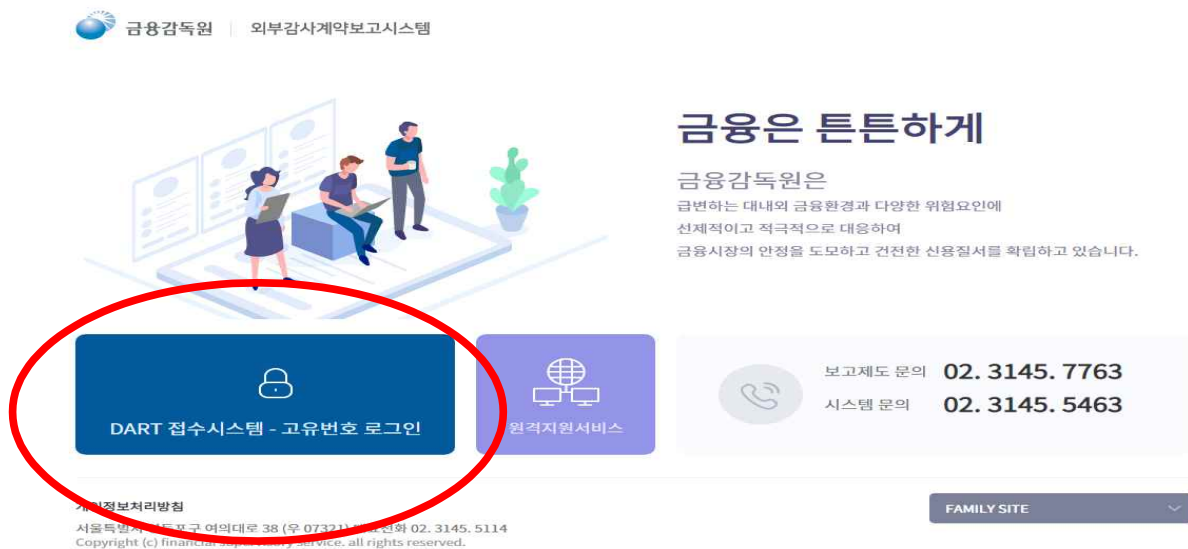
## 2

##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가. 제출방법

- 1 (시스템 접속)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 에 접속하여 회사의 '고유번호+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화면 >



- 2 (신고사항 입력) ①[회사·제출서류]-[감사전재무제표]<sup>1)</sup>를 선택하고 각 신고사항<sup>2)</sup>을 입력(1번~10번)

- 1) 감사전 연결재무제표도 제출해야 하는 회사의 경우, 제출서류로 [감사전 연결재무제표]를 선택하여 별도로 추가 제출
- 2) 회생절차 진행여부, 적용회계 처리기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 사업연도 종료일, 정기주총 개최 예정일,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일 등

※ **사업연도 종료일, 정기주주총회 개최 예정일, 감사전재무제표 제출일은 전년도 일자로 잘못 기재하는 등 특히 오류가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

- ② 11번 항목에서 재무제표의 종류마다 '제출', '미제출'을 선택

**< 제출 서류 선택 및 신고사항 입력 화면 >**

금융감독원 |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원격지원서비스 [→]

기본정보 **회사 · 제출서류** 감사인 · 제출서류 접수현황 공문 및 첨부서류 샘플 다운로드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보고제도 문의 02. 3145. 7763  
시스템 문의 02. 3145. 5463

1. 정보

1 회사명	운영서비스	2 회사고유번호	00000000
3 법인등록번호	1111112222223	4 회생절차 진행 여부	회생절차 진행중 <input type="checkbox"/>
5 적용 회계처리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input type="checkbox"/>		
6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여부	해당 <input type="checkbox"/>	6-1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7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여부	해당 <input type="checkbox"/>	8 사업연도 종료일	20191231
9 정기주주총회 개최 예정일	20200101	10 감사전 개별(별도) 재무제표 제출일	20200301

11 제출할 감사전 개별(별도) 재무제표의 종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도	주석
제출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input type="checkbox"/>

- ③ (서류첨부) 공문 및 재무제표를 첨부한 뒤, 제출책임에 '동의'를 선택하고 '제출' 버튼 클릭

- [공문 및 첨부서류 샘플 다운로드]에서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에 필요한 공문 샘플 다운로드 가능(내용이 동일할 경우 회사 자체 공문 사용도 무방)
  - 다만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시 회사는 반드시 회사명 및 대표이사 직인이 있는 공문(자유 양식, 직인생략 불가)을 첨부해야 하며,
  - 공문에는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합니다.”라는 내용 포함

- 감사전 연결재무제표 제출대상 회사는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신고서식과 감사전 연결재무제표 제출 신고서식을 별도로 분리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함
- 회사가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시스템에 첨부되는 파일형식은 DART편집기를 사용하여 작성한 파일(.dsd)\*을 원칙으로 함 (동 프로그램은 DART접수시스템에서 다운로드)
  - \*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DART공시 단계가 아님을 고려하여, DART편집기로 작성 후 저장된 파일(.dsd)형식과 저장 이후 공시목적에서 전자서명 후 생성된 파일(.drt)형식 중 저장된 파일(.dsd)형식으로 접수
- 다만, 작업시간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MS 엑셀, PDF 형식 등도 제출가능
- 회사의 기 제출 파일이나 관련된 신고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 제출 방법의 ①~⑥의 과정을 처음부터 진행하여 오류가 없는 첨부파일과 함께 다시 신고

\* 이미 제출된 문서의 수정은 불가

### < 제출할 문서 첨부 화면 >

2. 제출할 문서 첨부

공문 및 첨부서류 샘플 다운로드

---

2-1 감사전 개별(별도) 재무제표 제출 공문	<input type="text"/>	파일 선택
2-2 감사전 개별(별도) 재무제표(.dsd 파일)	<input type="text"/>	파일 선택
2-3 감사전 개별(별도) 재무제표(기타파일)	<input type="text"/>	파일 선택

제출자료에 대한 책임은 귀사에 있습니다. ✓ 동의

제출

④ (접수현황 조회) [접수현황]에서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와 공문이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확인\*

\* 제출일자 및 시간(접수일시)이 기재된 경우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 가능

< 접수현황 조회 화면 >

금융감독원 |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원격지원서비스

기본정보    회사 · 제출서류    감사인 · 제출서류    **접수현황**    공문 및 첨부서류 샘플 다운로드

(신) 제출현황  
[2019.12.16. 이후]

(구) 제출현황  
[2019.12.15. 이전]

보고구분    선택    ▼    접수일자    2019.01.14 ~ 2020.01.14

처리상태    선택    ▼

조회    초기화

나. 유의사항

①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식 포함) 및 공문을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주석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및 공문을 모두 제출하여야 함

② 증선위에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함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법령에서 요구하는 재무제표 제출기한보다 일찍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증선위에도 동시에 재무제표를 제출

③ (기한내 제출 의무)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이 시차를 두고 감사인에게 제출되었다면 증선위에도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을 각각 제출할 수 있으나

- 가. 제출 방법의 ①~④ 과정을 처음부터 진행하여 공문과 함께 본문과 주석을 새롭게 제출하여야 하고
- 이는 모두 법령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연 시 제재가 있을 수 있음

④ 주석의 경우, 일부만 작성하여 제출 시 미제출로 간주하며, 반드시 전체 주석을 제출하여야 함

⑤ 감사전 재무제표 증선위 제출 후, 재무제표 금액 등이 변동되더라도 기제출된 재무제표를 정정 하지 않음

- 증선위에 제출한 재무제표와 최종 재무제표의 재무수치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제재등의 조치는 없음

※ 다만,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수치가 관련 증빙·근거도 없이 작성되었거나, 대차가 맞지 않는 등 허술하게 작성된 경우,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

⑥ 비상장회사는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의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신고' 항목을 통해 제출

- DART편집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 파일(.dsd)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엑셀, PDF 등 기타 파일형식으로도 업로드 가능

\* 상장회사는 한국거래소 KIND 제출시스템(<http://filing.krx.co.kr>)에 접속하여 감사전 재무제표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제출



-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홈페이지(<http://acct.fss.or.kr>) - 감사인 선임 FAQ]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 우선 참조 요망

※ 유선확인 연락처

1. **감사전 재무제표 제도**(제출대상, 기한 및 서류 등) 관련: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 02-3145-7763, 7767

(문의 전화가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유의사항 內 내용을 숙지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 시 전산시스템 오류** 관련 : 금융감독원 정보화전략실  
☎ 02-3145-5463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신고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합니다.

1. 회사명	(시스템에서 자동입력)			
2. 회사고유번호	(시스템에서 자동입력)			
3. 법인등록번호	(시스템에서 자동입력)			
4. 회생절차 진행 여부	▼ 해당없음/회생절차 진행중			
5. 적용 회계처리기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			
6.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6-1.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 2조원 이상 / 2조원 미만			
7.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8. 사업연도 종료일	yyyy - mm - dd			
9. 정기주주총회 개최 예정일	yyyy - mm - dd			
10. 감사전 개별(별도) 재무제표 제출일	yyyy - mm - dd			
11. 제출할 감사전 개별(별도) 재무제표의 종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식
▼제출/미제출	▼제출/미제출	▼제출/미제출	▼제출/미제출	▼제출/미제출
12. 제출할 문서 첨부				
12-1. 감사전 개별(별도) 재무제표 제출 공문		공문		
12-2. 감사전 개별(별도) 재무제표 첨부 (DART편집기로 작성한 경우)		재무제표 (.dsd파일)		
12-3. 감사전 개별(별도) 재무제표 첨부 (그 외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경우)		재무제표 (기타파일)		

기재상의 주의

- 6.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여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한다.
- 7.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여부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한다.
- 9. 정기주주총회 개최 예정일은 관계법령 및 회사의 정관 등의 규정과 과거 사업연도 정기총회 개최일 등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개최일을 기재한다.
- 10. 제출일은 회사가 감사인에게 감사전 개별(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한 일자를 기재한다.
- 11. 감사전 개별(별도) 재무제표의 제출여부에 대해 각 재무제표별로 '제출' 또는 '미제출'을 선택한다.
- 12-1. 회사가 감사전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기 위한 공문을 첨부한다. 동 문서에는 회사명, 대표이사 직인 및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합니다."라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재무제표는 신고서식 12-2 또는 12-3 항목에 첨부한다.
- 12-2. DART편집기로 개별(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 파일(.dsd)을 12-2 항목에 첨부한다.
- 12-3. 다만, 예외적으로 DART편집기 이외의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파일을 12-3 항목에 첨부한다.

## 감사전 연결재무제표 제출신고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출한 연결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합니다.

1. 회사명	(시스템에서 자동입력)				
2. 회사고유번호	(시스템에서 자동입력)				
3. 법인등록번호	(시스템에서 자동입력)				
4. 회생절차 진행 여부	▼ 해당없음 / 회생절차 진행중				
5. 적용 회계처리기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				
6.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6-1.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 2조원 이상 / 2조원 미만				
7. 사업연도 종료일	yyyy - mm - dd				
8. 정기주주총회 개최 예정일	yyyy - mm - dd				
9. 감사전 연결재무제표 제출일	yyyy - mm - dd				
10. 제출할 감사전 연결재무제표의 종류					
연결 재무상태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결 자본변동표	연결 현금흐름표	주식	
▼제출/미제출	▼제출/미제출	▼제출/미제출	▼제출/미제출	▼제출/미제출	
11. 제출할 문서 첨부					
11-1. 감사전 연결재무제표 제출 공문			공문		
11-2. 감사전 연결재무제표 첨부 (DART편집기로 작성한 경우)			재무제표 (.dsd파일)		
11-3. 감사전 연결재무제표 첨부 (그 외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경우)			재무제표 (기타파일)		

### 기재상의 주의

6.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여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한다.
8. 정기주주총회 개최 예정일은 관계법령 및 회사의 정관 등의 규정과 과거 사업연도 정기총회 개최일 등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개최일을 기재한다.
9. 제출일은 회사가 감사인에게 감사전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한 일자를 기재한다.
10. 감사전 연결재무제표의 제출여부에 대해 각 재무제표별로 '제출' 또는 '미제출'을 선택한다.
- 11-1. 회사가 감사전 연결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기 위한 공문을 첨부한다. 동 문서에는 회사명, 대표이사 직인 및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연결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합니다."라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연결재무제표는 신고서식 11-2 또는 11-2 항목에 첨부한다.
- 11-2. DART편집기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 파일(.dsd)을 11-2 항목에 첨부한다.
- 11-3. 다만, 예외적으로 DART편집기 이외의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파일을 11-3 항목에 첨부한다.

## **붙임2** 관련 법규

\* 동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law.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인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사업보고서 공시 후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④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기한·방법·절차 등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인 회사가 제4항에 따른 제출기한을 넘길 경우 그 사유를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사유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3조의 방식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⑥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을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 회사는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이러한 행위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1. 재무제표: 정기총회 개최 6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정기총회 개최 4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 중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라 한다)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6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4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제1항제2호나목의 기한
- ③ 법 제6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대형비상장주식회사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이하 "금융회사"라 한다)
- ④ 법 제6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말한다.
- ⑤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제3항 각 호의 회사는 법 제6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한 후에 즉시 그 재무제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법 제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회계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
2.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3.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 분개[분개, 부기(簿記)에서 거래 내용을 차변(借邊)과 대변(貸邊)으로 나누어 적는 일을 말한다]를 대신하여 해 주는 행위
4.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방법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제6조,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2항, 제22조제6항 또는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42조(벌칙)**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20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및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회사가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재무제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제44조(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 위임 등)**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회사(주권상장법인인 제외한다)가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접수·심사하는 업무(이하 생략)